

營業秘密 保護制度의 運用事例(完)

目 次

- I. 判決事例의 分析
- II. 營業秘密의 管理狀態
- III. 營業秘密의 범위와 職業選擇의 自由
- IV. 컴퓨터 프로그램과 營業侵害
- V. 複製公法(reverse engineering)의 合法性
- VI. 不正目的의 使用
- VII. 契約과 信賴關係의 違反
- VIII. 營業秘密의 歸屬
- IX. 秘密管理 및 사용금지
- X. 不正 競爭에 의한 營業侵害
- XI.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保護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이 글은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부가 발간한 「營業秘密保護와 企業競爭 戰略」의 내용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임.

〈편집자 주〉

VIII. 營業秘密의 歸屬

① 사례 26 : 영업비밀의 귀속(Structural Dynamics Research Corp. v. Engineering Mechanics Research Co. et al)

원고 Structural Dynamics사는 물질의 구조를 해석하고, 실험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 Surana등 3인은 물질의 구조의 해석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

데 피고 3인은 프로그램이 미완성인채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 Engineering사를 설립, 상기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와 개념을 지니면서도, 여러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을 S사보다 빨리 개발 판매하였다.

Structural Dynamics사는 피고 Surana와 Engineering사에 대해 영업비밀 등의 부정취득 및 사용, 부정경쟁, 비밀유지의 계약 위반, Structural Dynamics사의 고객관계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피고 3인이 부정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은 물질구조의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이고, 실제 그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해 S사에 의해 고용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술을 취득한 방법이 결코 부정한 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신뢰의무가 발생하는가의 여부는 취득자의 취득양태에 달려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고용관계중에 취득한 비밀정보를 사용자 이익에 반하여 사용, 공개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그 후 고용 활동에서 자유롭게 사용, 공개할 수 있다.”

사용자가 기존의 영업비밀을 종업원에 공개하는 경우와 종업원 자신이 영업비밀을 개발하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자도 다시 구별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종업원을 특정 개발 업무에 종사시켜 상당정도 자원을 주고, 감독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그 연구성과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신뢰관계가 발생한다. 한편 그 개발이 종업원이 지니고 있는

기술 적용의 성과에 불과하고, 사용자 정보, 많은 비용, 감독을 통한 어떠한 원조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은 개발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지닌다. 피고는 영업비밀의 개발에 대부분 참여하였지만,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밀의 유지가 요구될 수 없다. 피고가 주도권을 가지고, 피고의 감독하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은 후자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가 서명한 ‘종업원 특허, 비밀정보계약’이란 문서에서 종업원이 개발한 비밀정보, 기술, 지식은 Structural Dynamics사에 귀속되고, 부정사용, 공개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계약은 유효하므로, 손해배상은 인정된다.

② 사례 27 : 계약의 유효성 (GTI Corporation v. Calhoon et al.)

원고 GTI사는 금속용접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경쟁사인 Sylvania사보다 뒤떨어져 Sylvania사와 같은 질의 금속용접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를 개량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GTI사는 Sylvania사로부터 Calhoon씨등 3명을 선발, 공장장, 기사, 주임기사로 탈령하고, 다음조항을 포함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계를 개량토록 했다.

(1) 공지사항

종업원은 당사에서 창작, 취득한 모든 발명, 발견, 개량을 즉시 당사로 알린다. 그리고 고용기간 중은 물론 퇴직후 5년간 단독, 공동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발명, 개발, 획득한 것으로서 (1)도체전자부품, (2)반도체 부품 또는 그것과 유사한 모든 품목의 제조기계, (3)당사가 사용, 판매, 제조하는 다른 모든 제품의 구성, 제조생산, 판매, 적용, 사용에 직접 간접 도움이 되는 또는 관련이 되는 것.

(2)비밀보호사항

종업원은 고용기간중은 물론, 퇴직한 이후에도 당사에 의해 알게 된 모든 공정, 발명,

방식의 비밀을 유지한다.

Calhoon등 3인은 각각 1년 반 및 2년동안에 기계개량을 마쳐, Sylvania사에 필적할만한 성능을 가진 기계를 완성시켰다. 그 후 Calhoon씨 등은 GTI사를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Metpar사로 이직하여, 상기 기계보다 더 우수한 기계를 제조하였다. GTI사는 Calhoon씨 등과 Metpar사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공개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귀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접기계에 관한 어떠한 비밀정보도 알려준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前 고용기간중에 취득한 이 분야에서의 노우하우를 원고에 알려주고, 다른 회사와 경쟁할만한 기계를 개량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개발에 필요한 지식 GTI사로부터 가져온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용접기계에 관해 고도의 기술을 지니고 있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얻은 지식과 별개로 기계의 개발을 진전시켰다. 피고는 기계발명에 필요한 개인적인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하다.”

③ 사례 28 : 영업비밀의 귀속(B. F. Goodrich Co. v. Wohlgemuth)

Goodrich사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주복의 연구, 설계, 조립, 테스트에 필요한 고도의 과학 지식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Wohlgemuth씨는 대학 졸업후 Goodrich사에 입사하여, 압력 우주복 부문의 기술개발, 판매등에 종사하였다. 그 후 부장이 되어 그 부문의 모든 연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그후 Wohlgemuth씨는 Goodrich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인 Latex사에 기술이사로 입사하였다.

Goodrich사는 Wohlgemuth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를 청구하였다. (1) Goodrich사 이외의 회사나 사업주를 위해, 고도 압력복, 우주복 등의 방호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 (2)(권한 있는 Goodrich

사 이외에) 설계, 제조, 판매에 관한 정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3)영업비밀, 시험연구 및 개발물, 비밀 공정 및 기술, Goodrich사가 이용개발한 데이터나 정보, Goodrich사의 장래계획, Goodrich사가 채용한 원료 데이터, 원료의 공급처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일, (4) 해당 정보에 관한 설계 개발 제조 판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일과 관련된 종업원과 직접 간접으로 접촉하거나 권유하여 퇴직토록 하는 일 등을 포함하였다.

원심은 “Latex사는 그 분야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얻기 위해 Wohlgemuth씨를 고용한 것이고, Wohlgemuth씨는 Latex사에 이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Goodrich사의 비밀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고 판결하고 Goodrich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Goodrich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Wohlgemuth씨는 경쟁회사 Latex사로 전직할 수 있고, 또 Goodrich사의 영업비밀 이외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중에 알게된 Goodrich사의 영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 요구하는 상업 도덕상, 금지의 권한이 있다. (Wohlgemuth의 공개는 후자에 해당된다)”

“Wohlgemuth가 Goodrich사의 영업비밀을 Latex에 공개하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Wohlgemuth는 Goodrich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Wohlgemuth가 Latex사에 고용된 상황이나 Wohlgemuth가 Goodrich사의 동료에게 한 말 등으로 미루어볼때 Wohlgemuth가 Latex사에 대해 영비밀을 공개(이 공개는 신뢰의무위반에 해당된다)할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정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IX. 秘密管理 및 사용금지

① 사례 29 : 사용정지(K-2 Ski Comp-

any v. Head Ski Company)

피고 K는 1967년 5월에 K-2 Ski사에 입사, 제조부문의 일반관리자로 승격하여 스키 제조, 부품의 조달 등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직무내용에 불만을 품고, 1970년 2월 Head Ski사로 전직하였다. 다음날 K-2 Ski사는 영업비밀의 부정공개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K-2 Ski사의 영업비밀중 하나를 1년간, 나머지 하나를 2년간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다.

Head Ski사는, K사-2 Ski의 비밀관리의 부실, 금지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1심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였으나, 금지기간과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i) 비밀성에 관해서는 완전한 비밀과 상대적인 비밀 등 두가지 이론이 있지만, 우리들은 상대적인 비밀을 지지한다. Head Ski사는 비밀관리가 소홀히 되었다는 예로, K-2 Ski사가 자재공급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시용 스키 두벌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Head Ski사의 사원은 그 회의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다른 스키제조자도 없었으므로, 이는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ii) 또한 K사-2 Ski사의 공장견학에 대해서도 경쟁회사사람들에게는 공개가 허락되지 않았고, 견학중에 K사-2 Ski사의 공정을 살펴보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비록 공장감시체제가 견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iii) 금지기간은 K사-2 Ski사의 영비밀을 이용하지 않고, 복제공법이나 독자적인 개발에 의해 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만큼이 적절하다. 가처분에 의한 금지가 이미 27개월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지기간에 대해 다시 사실 심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사례 30 : 금지의 범위(Huey T Lit-

tleton Claims Service, Inc. et al. v. McGuffee)

Littleton사는 보험의 정산, 査定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관련 고객에 관한 영업비밀을 갖고 있다. 그런데 Littleton사 지점장의 McGuffee는 출장시, 고객 2명에게 자신이 독립해도 자기와 관계를 지속해줄 것을 약속 받고, 그후 퇴직후 Littleton사의 사무실에서 파일 약 60개와 의뢰인 카드 45매를 Littleton사 사장의 제지를 뿌리치고,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Littleton사는 McGuffee가 가지고 나간 정보의 사용 및 고객과의 거래에 대해 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i) McGuffee의 정보 사용에 대해서 루이지애나 불공정거래 관행법 및 고용계약상의 비밀보호의무(fiduciary duty)의 위반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정하였다. (ii) McGuffee의 고객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McGuffee의 부정행위에 따르는 피해의 대부분은 이미 발생하였고, 명부의 반환과 앞으로의 접근 금지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위에 다시 Littleton사로부터 떨어진 舊 Littleton사의 고객과 McGuffee와의 거래마저 중지시킬 수는 없다.

주 고등법원은 원심을 지지하고, (i)에 대해서 “원종업원이 원사용자와 경쟁할 권리는 정당할 뿐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그러나 Littleton사의 지점장인 McGuffee씨가 고용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Littleton사의 고객에게 자신이 독립해도 자신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를 타진하는 것은 루이지애나 불공정 거래법에 위반되고, 수주의뢰 및 고객정보의 복사는 고용계약상의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그 정보의 사용을 영구금지할 것을 판결하였다.

X. 不正競争에 의한 秘密侵害

① 사례 31 : 부정 수단 이용(E. I du Pong de Numours and Co. Inc. v. Chri-

stopher et al.)

피고 형제는 사진작가로서, 신원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1969년 3월 19일 건설중의 du Pong사 공장을 공중촬영하여 현상한 후, 의뢰자에게 보냈다. du Pong사 종업원은 항공기를 조사하여 피고의 신원을 알아내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과 이미 찍은 사진의 유통금지를 신청하였다.

케타놀제조공정은 영업비밀이고,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중의 공장위에서는 메타놀공장의 일부를 볼 수 있고, 사진촬영도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가는 사진만 보아도,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자기의 행위가 공공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의 항공규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떠한 신뢰관계의 위반이나, 사기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신뢰관계위반이나 사기 등의 위법행위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요소이지만, 영업비밀의 보호가 이들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복제공법에 의해 경쟁자가 공정을 독자적으로 발견하거나 독자적이 개발로 발견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나 돈을 들여 독자적으로 발견하지 않고, 공정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부정한(improper) 것이다.

비밀보호를 위해 보통의 울타리나 지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예측하기 어렵고, 방어불가능한 스파이를 차단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Du Pong사에 대해서 미완성의 공장을 덮을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액의 자본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사례 32 : 산업스파이(Betriebsspionage)

원고X, 피고 Y는 금속가공업자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양자는 경쟁관계이고, Y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벤츠사에 납품하는 회사는 X회사이다.

Y는 탐정사무소를 통하여, X사에 스파이

G를 노동자로 위장취업시켰다. 그 목적은, X의 주장에 따르면, 부품제조방법의 탐지이고, Y의 주장에 따르면, X의 뇌물공여의 유무확인이다.

그러나 G는 제조방법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제조방법을 메모하고 있던 중 정체가 밝혀졌다. X는 Y에 대해 스파이활동의 금지, 탐지행위금지, 기술설비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의 금지를 요구하였다.

Y는 “벤츠사에서의 납품에서, 항상 X사에 지는 것은 오로지 뇌물때문이라고 생각,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스파이활동은 2주간에 한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지만, 제1심은 스파이활동의 금지를 인정하였다. 제2심은 여기에 추가하여 탐지행위의 금지를 인정하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였다.

재판소는 스파이 해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목적을 불문하고, 경쟁자에 의한 스파이의 잠입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2) 이는 스파이가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고, 무엇이 위임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알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사례 33 : 부정한 수단(Kaltflieprebverfahren)

피고Y는, 원고X사에서 제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X가 사용하는 냉류압법에 관한 도면, 문서 및 부품 원형을 훔쳐, 자료를 복사하였다. 그 후 Y는 X사를 퇴직하고, H사에 입사하였다. Y는 X사에서 얻은 경험, 지식을 H사에서도 사용하고, 개발사항마다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X사로부터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Y는 H사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X사는 Y사에 대해 지속적인 자료의 절도, 비밀누설을 이유로 형사고발하였다. 1심은 자료의 지속적인 절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2심은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Y는 자신의 기억을 이용하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였다.

첫째, Y가 부정하게 취득한 자료 중에 Y자신이 참여한 것은 별로 없다.

둘째, 통상의 직무로부터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기억에만 의존해서 알수 있기에는, 본건이 너무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째, Y는 계획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수집, H사의 업무에 종사할 때, 자료 확인을 위해 이용하였다.

넷째, 설사 Y가 자기의 기억만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Y는 X사에 일할때 계획적이고도 주의를 기울여 고찰한 것만으로 얻은 지식을 이용하였다.

⑤ 사례 34 : Duco-Geheimverfahren(GRUR 1955, 388)

D사는 파산하여, 원고X는 파산재산으로부터 D사의 영업 전부를 구입하였다. 그때 파산관재인은 주장에 따라 피고 Y는 자신이 개발한 유지제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원고 X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Y는 신회사를 설립,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유지를 제조 판매하였다.

원고 X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금지를 신청하였다. 제1심, 2심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것은 유일한 제조법이 아니므로, 청구는 기각되었다.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되돌려졌다.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판결을 파기, 되돌려보냈다. (1)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부담에 의해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킬 수는 없지만, 영업재산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속한 권리를 파산자에 구속력을 갖고 양도할 수는 있다. (2) 영업비밀에는 비배제권이 있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완전히 양도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3)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은 그것이 특허의 자격이 있는가에

관계없이, 영업재산이고 파산재단에 속한다. (4)이 재산의 취득자는 이전의 파산자 지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 나아가 파산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5)영업비밀을 영업재산의 일부로 한 파산자 파산관재인에 의한 양도후, 나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은 채권에게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⑤ 사례 35 : 비밀보호의무(아테나 사건)

원고X사(아테나사)는 A사가 발행하는 잡지를 구독자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A사로부터 8만 2천명의 주소를 수록한 컴퓨터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그 테이프를 문자화하여 종이에 인쇄하는 작업을 Y에게 맡겼으며, Y사는 다시 다시 컴퓨터 파일을 프린트시키기 위해 B사에게 일시맡겼는데, 이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복사되어 다른 제 삼자에게 매도되었다. 원고 X사는 Y사에 테이프 보관중에 부정하게 복사된 것을 테이프 보관에 요구되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이로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Ⅶ.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保護

① 사례 36 : 담배선전에 관한 아이디어의 판매(Di Angeles v. Scauzillo)

피고 Liggett and Meyer Tobacco 회사는 Chesterfield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1925년 12월 원고 Meyer는 담배 판촉선전문구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을 편지에 적어, 피고에게 보냈다. 이 아이디어는 두 신사가 서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담배피우시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나머지 한사람은 “고맙습니다만 나는 Chesterfield를 피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 아이디어를 적어 보내면서 적절한 대가를 청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후 피고회사는 1928년 7월, 이 아이디어를 채택한 광고를 미국, 캐나다 등의 잡지에 게재하였다. 이 광고는 골프장에서 한 사람이 Chesterfield담배를 들고 “나는 Chesterfield만을 피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아이디어의 적절한 대가로 25,000달러를 청구하고 인디애나주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재판소는 피고에게 9,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피고는 항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아이디어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항소인은 그 광고가 원고로부터 제시된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례는 아이디어의 판매에 관한 유명한 판례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편지를 받고 곧바로 뜯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 많은 미국회사는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채택하기 전에,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승락받은 후 개봉하고 있다.

② 사례 37 : 보험 권유에 관한 아이디어의 판매(Bristol v. Equitable Life Assur. Soc. of United States)

보험가입의 권유를 촉진하는 유력한 선전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그 대가로 취직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 아이디어와 자신이 입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어떤 한 보험회사에 보냈다. 이를 받아본 보험회사는 그 아이디어는 좋게 생각하였으나, 입사는 원치 않아 편지를 돌려보냈다. 그 후 보험회사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버렸다.

이를 안 그 제안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1심, 2심 모두 원고(제안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보낸 편지중에 이 아이디어는 다른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배타적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 기타 다른 이유로 (1)아이디어의 제시에 의해 대가를 얻을 목적이 있음을 상대방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2)비밀의 보호, 사용대가의 약속이 없는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사례 38 : 패션디자인의 도용사건(Dior v. Milton)

1956년 크리스찬 디오르사는 미국의 「스케치 서비스」라는 잡지를 상대로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위 잡지의 발행자가 크리스찬 디오르 신작 발표에 초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잠입하여 디자인을 사진촬영하고, 또한 크리스찬 디오르의 종업원로부터 복제물을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이었다. 크

리스찬 디오르사는 오랫동안 투자해온 명성과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주장,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잡지발행자측은 전시회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디자인의 비밀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찬 디오르사는 중요한 영업비밀인 디자인의 보호에 대해, 전시회에 초대된 자는 허가없이 전시된 디자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한 사람만 출입시켰음을 강조하였다.

뉴욕주 제1심 재판소는 (1)라이선스 체결자간의 계약관계의 방해 (2)전시회에 위장 잠입한 사실 (3)출입에 따르는 준수사항 위반 (4)종업원에 위법행위를 시켜 복제물을 입수한 사실 (5) 크리스찬 디오르의 명성을 이용한 영업 등을 이유로 크리스찬 디오르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

合同國際特許法律事務所

YOUNG INTERNATIONAL PATENT & TRADEMARK LAW FIRM

金	永	吉	代表 辨理士(特許·實用新案分野)
任	昌	顯	辨理士(特許·實用新案分野)
元	惠	中	辨理士(商標·意匠分野)
金	明	燮	辨理士(商標·意匠分野)
金	吉	燦	辯護士(知的財産權爭訟 一般法律事業務)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48-23 大興 B/D 402號

電話 : (02)553-1986, 553-1987 FAX : (02)555-0492, 556-2620
TELEX PATMARK K25039 CABLE PATMARK

<10월호 정정광고임>